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4. 11 선고 2015가단5396695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한국주택금융공사

피고1. A

2. B

3. C

4. D

5. E

6. F

변론 종결2017. 3. 14.

판결 선고2017. 4. 11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A은 64,206,9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. 6. 10.부터 2015. 8. 31.까지는 연 12%, 그 다음날부터 2016. 5. 31.까지는 연 8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
나. 피고 B, C, D, E, F는 피고 A과 공동하여 64,206,9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. 6. 10.부터 2016. 5. 31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피고 A, B, C, D, E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

가. 청구의 표시 : 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나. 적용법조

(1) 피고 A, B, D, E에 대하여 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(2) 피고 C에 대하여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2.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

갑 제1 내지 10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'청구원인'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피고 F는 나머지 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'청구원인' 기재 불법행위(이하 '이 사건 불법행위'라고 한다)로 인한 원고의 대위변제금 합계 64,206,941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5. 6. 10.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16. 5. 31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이에 대하여 피고 F는 이 사건 불법행위에 공모하거나 계획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, 위 피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고, 을바 제2호증의 기재 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피고 F는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한 금융기관인 농협은행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고 대출심사시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진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는 등의 내부규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하게 심사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, 농협은행의 위와 같은 과실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다투나, 피해자 측에 어떠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

뿐만 아니라,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그로 인한 이익을 향유한 자가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면하려고 주장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(2011. 4. 28. 선고 2010다106702 판결 참조), 위 주장도 이유 없다.

또한 피고 F는 일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, 을바 제1,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위 피고가 2014. 6. 2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 제13376호로 농협은행 주식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천안지방법원 2014고단612호와 관련한 손해배상금 14,000,000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, 한편, 갑 제 8 내지 10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위 피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 외에도 동종 불법행위를 다수 하여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위 공탁금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·증명이 있어야 할 것인데, 이에 관한 아무런 주장·증명이 없을 뿐 아니라, 채무자가 공탁원인이 있어서 공탁에 의하여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고, 일부 공탁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(대법원 2011. 12. 13. 선고 2011다11580 판결 참조), 위 주장도 어느모로보나 이유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정계선

별지